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제 주 특 별 자 치 도 여 행 객 에 대 한
면 세 점 특 례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추경호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추어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금액의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(2022. 00. 00. 공포, 2023. 1. 1. 시행)됨에 따라,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판매가격 한도와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 한도를 각각 ‘600달러’에서 ‘800달러’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, 면세물품의 구입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류 면세물품의 범위를 ‘1리터 이하의 1병’에서 ‘합산 2리터 이하의 2병’으로 확대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2022. 12. 00. ~ 12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600달러”를 각각 “800달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의 표 중 주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주류	2병	용량은 2병 합산하여 2리터(L) 이하, 가격은 2병 합산하여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로 한다.
----	----	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제5조(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) ①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판매가격을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”이란 한 품목당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<u>600달러</u> 이하의 것을 말한다.			제5조(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800달러</u> -----.		
②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5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1인 미합중국 화폐 <u>600달러</u>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.			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800달러</u> -----.		
③법 제121조의13제5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”이란 다음 표의 주류 및 담배를 말한다.			③----- ----- ----- -----.		
구분	수량		비고	구분	수량
주류	1병		1리터 이하이고,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.	주류	2병
담배	필런	200개비	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한다.	담배	필연
	엽필연	50개비			엽필연

전자 담배	필련 형	200개비
	니코 틴 용 액	20밀리리터
	기타 유형	110그램
	그 밖의 담배	250그램

-- --	---	-----
	---	-----
	---	-----
	---	-----
-----		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323